

보도 일시	2023. 3. 21.(화)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3. 3. 21.(화)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승한 (02-2110-1430)
		담당자	사무관 손건우 (02-2110-1431)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 승인 유효기간은 4년( ‘23.4.22.~’ 27.4.21.)을 부여 -**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실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3년 3월 2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인 (주)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 ‘23.2.22.~24.)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하였다.

※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1인), 방송 · 미디어(3인), 법률(2인), 경영 · 회계(3인), 기술(1인), 시청자 · 소비자(3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주)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하였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22.9.21.)」에 따라 ‘재승인’ 을 의결하고 4년( ‘23.4.22.~’ 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하였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 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주)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붙임 : 1. '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2. '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3. (주)조선방송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붙임1)

## 20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 결과

(주)조선방송

심사사항 (배점)	심사결과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325.15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점)	123.4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	116.7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	69.87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57.77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1.00
합계(1,050점)	723.89
최종 환산점수(1,000점)	689.42

(붙임2)

## 20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분 야	이 름	주요 이력
심사위원장	이 민 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방송(3인)	김 용 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연구교수
	홍 문 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홍 종 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
법률(2인)	손 형 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이 강 혁	법무법인 더온 변호사
경영·회계 (3인)	노 경 호	대림대 경영과 교수
	민 동 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심 재 용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술(1인)	허 남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청자·소비자 (3인)	강 혜 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유 성 식	수원대 교양대학 특임교수
	한 상 규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본부장

(붙임3)

**(주)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b>재승인 조건</b>	<p>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승인 신청서 중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용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한 기자·PD 등에 대해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li> <li>-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ul> <p>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재·보궐 선거 포함)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li> </ul> <p>※ '23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함</li> </ul>

구 분	내 용
	<p>4. 편성의 독립성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성위원회를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고 전년도 편성위원회 논의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5.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li> <li>-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ul> <p>6.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실적 점검결과 투자실적이 투자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재승인 기간 내 기존 투자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li> <li>-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할 것</li> </ul> <p>7.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20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미달하였을 경우, '23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p> <p>8.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18일 당시 재승인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p>
권고	<p>1.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를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p>

구 분	내 용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촬영 시간을 준수하고, 정서적·물리적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점검할 것</li> <li>3.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와 방송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li> <li>4.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li> <li>5.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및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사 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li> <li>6. 방송콘텐츠 펀드 조성·운영, 투자 참여 등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li> <li>7.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내부 위원회에 시민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li> <li>8. 매년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방송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 결과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ul> </li> <li>9.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li> </ol>